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

의안번호	563
------	-----

제출년월일 : 1999. 8. 31.

제 출 자 : 고성 군 수

1. 제안사유

국가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행정개혁으로 추진중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용인부를 감축하고, 민간 용역위탁을 통한 예산절감과 청사 관리의 전문업체 위탁용역을 통한 청사관리의 극대화과 민간인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청사(본청,의회,별관의 건물 및 청사외곽 및 정원)의 청소용역 위탁운영

3. 참고자료

- 정부조직법 제6조3항
- 국유재산법 제21조의2 제1항
-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및 제2조, 제11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제2조,제3조,제4조.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

고성군 청사 청소용역을 국유재산법 제21조의2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 운영하는 것을 동의한다

▣. 법 적 근 거

-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21조의2 제1항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외의 자에게 당해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1조 및 제2조, 제11조의 “목적, 정의,위탁대상 사무기준 규정”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고성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청사용역 기본현황

○ 관리대상

- 건물(2,577평) : 본관(1,449평), 별관(825평), 의회(303평).
- 부지(2,187평) : 청사외곽 및 정원

○ 청소사역 현황

- 일용인부 : 4명(남 1명, 여 3명)

○ 청소구역 및 방법

- 매일 : 군수실, 부군수실, 의장실, 의원사무실, 복도, 화장실, 청사광장, 화단
- 주기 : 실과사무실, 의회사무실, 회의실, 지하창고, 세탁물, 유리창, 본회의장

□ 연간 소요 예산 비교

가. 현행 유지시 연간 소요예산(₩58,926,650원)

- 인부임 : 4명(남1,여3) ₩42,700,000원
- 복리후생비 : 국민연금, 의료보험 ₩1,920,000원
- 청소소모품 : 소모품 1식 ₩4,080,000원
- 유리창 및 외벽청소 1회 ₩7,000,000원
- 일용인부 연 퇴직금 증가 ₩3,226,650원

나. 전문업체 청소 용역 위탁시(₩57,664,530원)

- 인부임 : 4명(남1,여3) ₩32,040,000원

특별지원인부(기계공, 마무리공등)

- 복리후생비 : 산재보험외6종 ₩7,886,000원
(산재보험, 상여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신체검사비, 근무복, 고용보험)
- 청소소모품 : 소모품 1식 ₩4,000,000원
- 유리창 및 외벽청소 1회 ₩6,000,000원
- 기업이윤 5% ₩2,496,300원
- 부과세 10% ₩5,242,230원

*청사용역전문업체 견적으로 계약금은 가변적임

계약시 기존 일용인부의 잡부역을 포함한 사역 포괄계약 가능

다. 민간위탁시 예산절감액 : ₩1,262,120원 절감/ 년간

□ 청사 청소용역 위탁의 필요성

- 민간위탁 용역을 통한 예산절감(인부임상승, 퇴직금증가의 장기적 안목)과 청소용역 전문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사역인부의 산업재해시 재해보상의 책임성 명확, 사역인부의 태만등에 따른 통제력 확고, 경조사등에 따른 결원시 대체근무 원활, 용역업체의 주기적인 대청소(왁스, 진공청소등), 청사 벽면 및 유리창 청소의 예산절감 등으로 청사 청소용역이 전문업체 위탁운영 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